

감 사 보 고 서

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08회계연도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09년 4월 30일

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

감사 안일훈 (인)

감사 이익성 (인)

피 감사 자

직명 산학협력단간사

성명 고평진 (인)